

▣ 대상

- 일반임대사업자(일반과세자)로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거나, 사업용(업무용)으로 사용 할 경우
- ※ 주택임대사업자, 주거용으로 사용,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님.
- ※ 세무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및 세무사 등 상담을 통하여 계약자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▣ 환급신청 절차

- ※ 신고관서: 북대구세무서
- ※ 주소: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8 (지번주소: 침산동 402-1번지)
- ※ 문의 전화: 053-350-4200(북대구세무서), 국번없이 126(국세청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환급계좌 개설 구비서류</p> | <p>본인 신분증,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, 오피스텔 공급계약서(사본) 1부, 동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(인감증명서 첨부), 인감도장 및 위임장, 환급계좌개설신고서 1부, 통장사본 1부, 통장 인감도장 ※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</p> |
| <p>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및 환급 요청</p> | <p>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발송 → 발송 후 수령 확인 전화 필요 [보내실 곳] 포스코건설 대구마케팅센터 - 전화: 053-795-7200 / 팩스: 053-792-8700 (동호수 및 성함,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메일주소 기재 요망) -발급하는 자: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사 모아하우징(주) -발급시기: 각 납부시기(계약 시, 매회 중도금 약정일, 잔금 시)별 대금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 발급 -건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,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가 발행됨. ※ 단, 계약시 납부한 계약금은 사업자 등록 신청 전이므로,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발급하여 이메일로 전송됩니다.</p> <p>② 세금계산서 수령 후 관할 세무서에 환급 요청 -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신청 가능 -발급일로부터 익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 가능, 15일 이내 환급 됨.</p> |
| <p>※ 유의사항(필독)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명의변경 시, 매수인은 기 발급 완료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새로운 매수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은 불가합니다. (명의변경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해서만 새로운 매수자로 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) 2. 계약자가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당사로 송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(당사에서는 계약자의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,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.) 3.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일반과세자로 10년 이상을 유지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이전 될 경우에는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 중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추징하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포괄양수 인 경우에는 제외이며, 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|



※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르며,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